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 (안)

의안 번호	4 5 4
----------	-------

제출년월일 : 1997. 12. 13.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제정사유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토지·시설물 취득·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 지원사업중 기본지원사업의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 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 중에서 어촌계나 마을 명의를 취득·관리가 효과적인 재산은 당해 주민단체 명의로 취득·관리토록 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명백히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고성군수 명의 취득 원칙, 다만 재산의 성질 및 관리에 따라 어촌계나 마을단위(이하 '단체'라 한다) 명의로도 취득가능 (안제3조제1항)
- 단체명의 시설물 취득시는 지원사업 총액의 50%초과 못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성군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득 가능 (안제3조제2항)
-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설치조성사업은 군수직영 시행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성질에 따라 해당단체 보조사업 시행 가능
-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 준용 (안제4조제1~2항)
- 단체명의의 시설물을 임대, 전매, 폐기 처분등의 변동사유 발생시는 군수의 사전 승인 조치(안제5조)
-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등 사후관리 책임은 관리자가 수행 (안제8조)
- 단체명의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 위한 자체 기금조성(안제9조)

3. 관계법규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9조 (지원사업시행자)
 - 공사(육영사업), 지방자치단체의장(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30조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36조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사항)
 - 동법 시행령에 정한것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수 있다
- 지방자치법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 행정목적 달성의 재산보유 할 수 있으며,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제134조 (재산의관리 및 처분)
 - 재산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 양여, 대여, 출자,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3개항외 개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수 없다.
-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6조 (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제4조 (보조대상)
 - 법률규정시, 국고보조재원, 군의권장 필요사업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 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기본지원 사업의 소득중대 사업 및 공공시설 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재산의취득)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마을단위나 어촌계등(이하 "단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시는 단체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 ①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다. 다만, 단체에서 시행함이 운영관리에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단체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중 단체명의로의 시설물을 임대, 전매, 폐기 처분등의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해당 단체는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 ①군수가 취득·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의 신중한 검토와 당해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취득·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 하거나 정지, 취소할 수 있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으로 공공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사용료 및 대부로 감면) 마을이나 어촌계 등 단체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관리자가 수행한다.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해당단체는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효율성과 책임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로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

제10조(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